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31
----------	--------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정신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 추진 필요성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로 정신건강 예방과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위기개입으로 자살예방 등의 전문성 확보
- 정신질환자 대상 전문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 환경 기반조성

다. 민간위탁의 내용 및 범위

1) 재위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인적·물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 : 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위탁기간 : 2016. 4.19. ~ 2022. 4.18.(개소일:2007.10.4.) ○ 소재지 :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 시설현황 : 연면적 245㎡(사무실 포함 6실) ○ 운영인력 : 총 18명(센터장 1명, 직원 17명) ○ 차량현황 : 업무용 차량 1대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산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집행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집행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2,560,373</td> <td style="text-align: center;">2,180,474</td> <td style="text-align: center;">8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9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709,530</td> <td style="text-align: center;">686,164</td> <td style="text-align: center;">9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0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860,565</td> <td style="text-align: center;">770,362</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0.31.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990,278</td> <td style="text-align: center;">723,948</td> <td style="text-align: center;">73%</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계	2,560,373	2,180,474	85%	2019년	709,530	686,164	97%	2020년	860,565	770,362	90%	2021년 (10.31.기준)	990,278	723,948	73%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계	2,560,373	2,180,474	85%																		
2019년	709,530	686,164	97%																		
2020년	860,565	770,362	90%																		
2021년 (10.31.기준)	990,278	723,948	7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양호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최근 3년간(2019~2021년) 지도점검상 지적사항 없음																				
사건·사고 현황	○없음																				
성과평가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및 점수기준 : 내부평가, 100점 만점 ○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신보건사업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 평가점수 95점 - 2020년 : 평가점수 91점 - 2021년 : 사업 미완료(정상 진행중) 																				

2) 위탁내용 :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 자살고위험군 지원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성 등

3) 위탁범위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성산1동주민센터 3층

2) 시설현황 : 연면적 245㎡(사무실 포함 6실) (단위 : 개)

계	사무실	센터장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6	1	1	2	1	1

3)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22. 4.19 ~ 2025. 4.18.)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위탁운영 적격 심사위원회(별도구성)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편 성 내 역			세 부 내 역
		국비	시비	구비	
총 사업비	1,163,909	202,836	480,536	480,53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58,236		379,118	379,118	인건비,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83,673	91,836	45,918	45,919	인건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00,000	100,000	50,000	50,000	프로그램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2,000	11,000	5,500	5,500	정신질환자 치료비

※ 2022년 정신보건사업 가내시 기준으로 작성한 예산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전문성, 안정성,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
- 2)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므로 법적인 면에서도 적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위탁 등)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